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3. 8. 22 선고 2022가단54028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대한민국

피고A

변론 종결2023. 7. 4.

판결 선고2023. 8. 22.

주 문

1. 별지 부동산 목록 제1, 2, 3, 4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7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20. 10. 28.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취소하고,
나. 피고는 B에게 대전지방법원 태안등기소 2020. 10. 29. 접수 제20436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별지 부동산 목록 제5, 6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7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20. 10. 28.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23,409,523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나. 피고는 원고에게 23,409,52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B와 피고 사이의 상속재산 분할협의

1)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순차로 제1 내지 6부동산이라 하고, 위 각 부동산을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은 C의 소유였는데, C은 2020. 9. 28. 사망하였다.

2)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공동상속인인 피고, B, D는 2020. 10. 28.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것으로 상속재산 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고, 피고는 이에 따라 2020. 10. 29. 대전지방법원 태안등기소 접수 제20436호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순차로 '제1 내지 6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나. B는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별지2 <표>기재와 같이 양도소득세 386,978,200원을 체납하고 있었다.

다. 이 사건 협의 당시 B는 적극재산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2/7 지분 시가 합계액 145,691,335원, 충남 태안군 E 답 489m² 시가 28,851,000원, 충남 태안군 F 임야 9,918m² 중 지분 662/9,918 시가 32,438,000원, 충남 태안군 G 임야 35,936m² 중 지분 4,148/36,655 시가 203,331,780원, 충남 태안군 H건물 제2층 1호 시가 70,000,000원 합계 480,312,115원 상당이 있었던 반면, 소극재산으로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 386,978,200원, J조합에 대한 채무 50,000,000원 합계 436,978,200원 상당이 있었다.

라. 한편, 피고는 2021. 7. 14. K에게 제5, 6부동산을 81,933,333원(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에 매도하였고, K은 2021. 8. 2. 제5, 6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주식회사 L 충남대전지사에 대한 감정축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빠졌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B의 법정상속분인 2/7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분할협의를 원고를 비롯한 B의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B는 이로 인하여 자신의 일반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나.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

1) 제1 내지 4부동산 중 2/7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분할협의를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B에게 제1 내지 4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한 제1 내지 4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원상회복은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액배상에 의한 원상회복이 허용된다 할 것이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협의분할 이후 제5, 6부동산이 제3자에게 매도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제5, 6부동산에 관하여는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제5, 6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한 협의분할은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386,978,200원, 이 사건 변론 종결 당시 제5, 6부동산 중 2/7 지분의 가액 23,409,523원¹⁾ 중 적은 금액인 23,409,523원의 한도 내에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23,409,52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모두 인용한다.

판사강문희

별지

1) 이 사건 변론 종결 당시 원고의 피보전채권액과 제5, 6부동산의 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원고의 피보전채권액과 2021. 7. 14.자 매매가액을 기준으로 한다.